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의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0010003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0.01.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3.07

www.cdllmall.co.kr

cdllmall7788@hanmail.net

[아이꿈터]

정 보 공 개 서

(주)아이꿈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 .

(주)아이꿈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에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77-7898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1577-089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팀 031-544-191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8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9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4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4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25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27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28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아이꿈터	아이꿈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08.28	2007.09.30	변현숙,백운일	1577-7898	1577-0898
	법인등록번호	110111-3743253	사업자등록번호	204-86-05090	

※ 개인사업자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다가 2007년 09월 30일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음.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백운일	아이꿈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백운일.변현숙	1577-7898	1577-089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변현숙	아이꿈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백운일.변현숙	1577-7898	1577-089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백학준	아이꿈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백운일.변현숙	1577-7898	1577-089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백지연	아이꿈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백운일.변현숙	1577-7898	1577-0898

3. 가맹희망자가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아이꿈터]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아이꿈터	
상 호	아이꿈터 ○○점	
상표(서비스표)		출원 제4120020007518호 등록 제4100934230000호
광고등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하거나 합병한 사실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천원단위 이하 반올림,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18,536,197	4,761,529	13,774,668	16,343,533	1,119,897	635,917
2022	19,878,449	6,944,936	12,933,513	12,338,654	661,342	129,994
2023	19,822,211	7,015,283	12,806,928	10,011,516	571,421	70,346

※ 별첨1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이사	변현숙	대표이사	2007.8.20~현재	대표이사	회사 총괄
	백운일	대표이사	2007.8.20~현재	대표이사	업무 총괄
	백학준	사내이사	2016.1.04~현재	팀장	해외업무총괄
	백지연	사내이사	2013.1.02~현재	팀장	온라인사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	3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아이컴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등록일자	출원·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일
아이꿈터	서비스표	2002.04.09 2003.11.19	출원 제4120020007518호 등록 제4100934230000호	백운일	2033.11.19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아이꿈터]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3 년 11월 15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9년 05월 20일)

2. [아이꿈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아이꿈터	아이꿈터	백운일	2003년11월15일~2020년3월12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주)아이꿈터	아이꿈터	변현숙	2020년 3월 13일 ~2020년 10월 19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주)아이꿈터	아이꿈터	백운일.변현숙	2020년 10월 20일 ~ 현재까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3. [아이꿈터]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아이꿈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도소매	문구,가구,교구,유아용품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이꿈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32	28	4	34	30	4	33	31	2
서울	7	6	1	7	6	1	7	6	1
부산	2	2	-	2	2		2	2	
대구	1	-	1	2	1	1	2	1	-
인천	1	1	-	1	1	-	1	1	-
대전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12	10	2	13	11	2	12	11	1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1	1	-	1	1	-	1	1	-
경북	2	2	-	2	2	-	3	3	-
경남	1	1	-	1	1	-	1	1	-
전북	2	2	-	2	2	-	2	2	-
전남	-	-	-	-	-	-	-	-	-
제주	1	1	-	1	1	-	1	1	-

5. 바로 전 3년간 [아이쿠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7	2	-	1	-	28
2022	28	2	-	-	-	30
2023	30	1	-	-	-	31

※ 아이쿠퍼의 가맹점 내역은 별첨2 참조.

6. [아이쿠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아이쿠퍼]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아이쿠퍼] 가맹점사업자 한명이 2023년1월1일부터~12월31일에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평균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가 산정한 가맹점의 추정 매출액은 2023년 1월부터 12월 사이의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으며,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은 지역 및 매장의 위치,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신규

가맹점 희망시 본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매출액 산정 방법

-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액 * 추정비율130%

(단위: 천원, 천원이하 절삭, 부가세 별도)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의 2023년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상한)		연간 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매출 액	면적3.3 ㎡	상한	면적3.3 ㎡	하한	면적3.3 ㎡	
전체	31	215,026	6,510	572,121	38,759	26,554	1,654	
서울	6	206,609	8,470	387,586	38,759	54,120	2,640	
부산	2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11	218,136	5,542	572,121	17,232	26,554	1,645	
강원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3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	------------	---------

2023	31	4023일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총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아이컴터]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23]쪽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부가세 별도,천원이하 반올림)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61,924	161,924	-	
광고	비공개	비공개	161,924	161,924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우리은행	종량교 지점	서울시 종량구 상봉2동 130-2	02-432-7661

※ 별첨3 가맹금 예치제도 설명 참조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이컴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냉난방, 인허가비용 등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이컴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 오픈지원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판촉물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전체투자비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0,200]				
가맹비	영업 비밀 전수비	2,200	계약 체결 시 예치	오픈 전 매뉴얼 미제공시	영업 비밀 전수 시 소멸
	교육훈련비	3,300		교육 미실시	교육실시후
오픈지원비		2,200		오픈 전 반환	오픈 후
판촉물 등(카달로그 비용)		5,500		주문 전 반환	주문 후
계약이행보증금		15,000		정산후반환	채무 초과 및 손해배상
개설관련비 (165㎡ 기준)	진열매대제작	22,000	해당 업체(인카사)의 계약 내용에 따름		
	초도상품	110,000	매대 제작 완료 시	입고전 반환	입고 후

※ 판촉물 등(카달로그 비용), 초도상품 등은 주문의 양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 개설관련비 중 진열매대 제작의 경우 당사의 기존 가맹사업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당사가 수령하는 것이 아닌 개별 업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매장 면적, 공사

기간,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 시설 공사 및 인·허가비용,비품 등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비용 외에 추가되는 비용으로는 개별 업체간 직접 거래로써 1577대표번호 연결 비용, 전화링고 서비스, 이니시스 쇼핑몰 제작비용 및 홈페이지 관리비용, 통신판매업 등록비용 등등이 추가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진열매대(인테리어부문)를 시공하는 경우 당사가 정하는 규격 및 모델을 참조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이 경우 귀하는 금 오백오십만원(부가세 포함)을 감리비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최초가맹금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맹비	영업 비밀 전수비	2,200	계약 체결 시 예치	오픈 전 매뉴얼 미제공 시	영업 비밀 전수 시 소멸	
	교육훈련비	3,300		교육 미 실시	교육 실시 후	
오픈지원비		2,200		오픈 전 반환	오픈 후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5,000]				
계약이행보증금	15,000	계약 체결시 예치	정산 후 반환	채무 초과 및 손해배상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보증금은 부가세없음)

구분	가맹비	오픈지원비	보증금	판촉물	합계
금액	5,500	2,200	15,000	5,500	28,200

※ 별첨3 예치가맹금제도 설명 참조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평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32,000]	(50평기준)				
개설관련비 (165㎡ 기준)	인테리어비 (진열매대제작)	22,000	440	해당 업체(인카사)의 계약 내용에 따름			업체에 결제
	초도상품	110,000		매대제작 완료시	입고전 반환	입고 후	

※ 카다로그 비용, 초도물품 등은 주문의 양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 개설관련비 중 진열매대 제작의 경우 당사의 기존 가맹사업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당사가 수령하는 것이 아닌 개별 업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매장 면적, 공사 기간,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 시설 공사 및 인·허가비용,비품 등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비용 외에 추가되는 비용으로는 개별 업체간 직접 거래로써 1577대표번호 연결 비용, 전화링고 서비스, 이니시스 쇼핑몰 제작비용 및 홈페이지 관리비용, 통신판매업 등록비용 등등이 추가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진열매대(인테리어부문)를 시공하는 경우 당사가 정하는 규격 및 모델을 참조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이 경우 귀하는 오백오십만원(부가세 포함)을 감리비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자율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선정 → 당사 매뉴얼 기준에 부합하는 가맹점 선정 → 설비 및 비품등 당사의 준수 사항 완비 → 당사의 개점 승인 (계약체결 및 임대 후 100일내 개설)

※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당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서비스 및 청결, 품위를 준수할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아이꿈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의 분납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의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사유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사	330	아래※1 설명 참조	기간에 안분	기간 만료	월정액
상품대금		주문량기준		물품하자 및 반품	납품 후	
POS비용	협력업체	별도계약	별도계약	기간에 안분	기간 만료	
광고 분담금	당사	50 : 50 (본사:가맹점)	명세서 수령 후 2주내	광고 미시행	광고 시행후	
교육훈련비	당사	실비	교육실시 전	교육미실시	교육실시후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	협력업체 또는 인테리어 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아래※2 참조)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26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당사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간 경과 후 익일부터 부담

※1. 물품대금 정산 방법

- 매월 1일 ~ 말일 동안의 물품대금은 익월 15일 로열티를 합산하여 결제 합니다.

※2. 노후시설 보수 시 가맹점사업자가 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가맹계약이 종료·해지·영업양도할 경우 36개월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상각잔액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한다)의 2023년도 평균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사유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사	330	아래※1 설명 참조	기간에 안분	기간 만료	월정액
상품대금		주문량기준		물품하자 및 반품	납품 후	
POS비용	(주)이니시스	별도계약	별도계약	기간에 안분	기간 만료	
광고 분담금	당사	p.22 23참고	명세서 수령 후 2주내	광고 미시행	광고 시행 후	
교육훈련비	당사	실비	교육실시전	교육미실시	교육실시후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	인카사 또는 인테리어 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아래※2 참조)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26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당사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간 경과 후 익일부터 부담

※1. 물품대금 정산 방법

- 매월 1일 ~ 말일 동안의 물품대금은 익월 15일 로열티를 합산하여 결제 합니다.

※2. 노후시설 보수 시 가맹점사업자가 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가맹계약이 종료·해지·영업양도할 경우 36개월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상각잔액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사항에 대하여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 예정대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조치합니다.

(2) 전항의 승계에 따른 계약조건이 가맹본부와의 계약조건과 동일하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가맹금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할 가맹금은 해당 계약기간 내에 비소멸성 가맹금에 한하며 그 범위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업표지, 지식재산권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표지, 지식재산권 등이 만료로 인한 소멸, 변경, 효력 상실을 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

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에 의한 가맹본부의 대체수단이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신규계약으로 요청할 경우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채권, 채무, 계약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양수도)를 그대로 승계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 중 교육훈련비와, 보증금, 오픈지원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경업금지 기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종의营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당사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상호,간판등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부착물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아이꿈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인테리어등·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설비와 물품을 당사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2				
3				
4				
5				
6				

- ※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소매업:자동차제외”에 해당하여 작성을 생략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아이꿈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계				

- ※ 당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아이꿈터]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는 조건으로 특정한 대가를 가맹점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아이꿈터]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서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된 상품 이외의 상품·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아래에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상대방	상품 또는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경쟁사	당사가 공급한 상품	상품 등 판매 금지	1회 위반 : 서면 경고 2회 위반 : 물품공급 중단 3회 위반 :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상품 등의 공급가격을 통상적인 가격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상품 등의 판매가격을 지역별 상권에 맞추어 예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영업적 사유가 없는 한 당사는 귀하가 이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당사와 동종업계 및 경쟁의 소지가 있는 업종 (문구,아동가구,아동용품 관련업종 등)	아이곰터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 특별시의 경우, 2개 행정자치구를 기준으로 협의 나. 광역시의 경우, 2~3개의 행정자치구를 기준으로 협의 다. 그 외 시군구의 경우, 2~4개의 행정자치구를 기준으로 협의. 다만, 시군 단위가 가평군, 춘천시처럼 대규모일 경우 광역시를 기준으로 협의함.	가맹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당사는 상기의 표와 같이 영업지역의 설정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매장에 대한

영업지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후 계약서에 별첨을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사업이 아닌 아래의 MRO사업과 홈페이지 판매 사업의 경우,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가. “MRO 사업”이란 “가맹본부”가 MRO사업자, B2B 고객 즉 최종 소비자 중 기업고객으로 배송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 지역인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하고 배송은 “가맹본부”가 담당하는 영업방식을 말합니다.

나. “홈페이지 판매 사업”이란 고객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미취급 상품 또는 “가맹본부”가 보유한 과다한 재고의 판매에 한하여 “가맹본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지마켓	www.gmarket.co.kr	교재교구	
	11번가	www.auction.co.kr	교재교구	
	옥션	www.11st.co.kr	교재교구	
	쿠팡	www.coupang.com	교재교구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아이콤터’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아이콤터]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갱신 시 매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의 운영교범, 영업비밀 등을 제3제에게 배포하거나 공개한 경우	제36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활동 등을 할 때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활동 등을 할 때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가맹본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대표자회의, 전국가맹점 수련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받지 못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경우	제31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시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보증금 부족분을 충당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포스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출을 누락시킨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매장 내 가맹본부의 임직원 출입을 방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처분행위를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의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의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영업일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가맹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1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가맹점사업자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가맹본부가 약정한 물품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제31조 3항
가맹본부가 본 계약 조항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가맹본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가맹사업 전체의 명예와 신용이 현저히 훼손되어	
가맹점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 60일전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시정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합의에 의한 해지

상호간 즉시 계약 해지 사유 (상호간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사망 또는 재해로 인한 장애판정을 받아 가맹점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32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이민을 가거나 지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수정에 관하여 합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시 2. 영업지역 재조정	별도조항 없음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양도 60일 전에 당사에 서면신청 후 당사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60일 전에 양도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새로운 가맹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과 절차는 신규 계약과 동일한 가맹비, 보증금 등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채권, 채무, 계약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양수도)를 그대로 승계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 중 오픈지원 경비(오픈 시 인력지원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반환함)와 오픈시 교육비, 보증금 등을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및 위탁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맹점운영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1개월내 서면 통지 → 본부의 승인 → 모든 권리·의무 이전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당사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당사와 동종업계 및 경쟁의 소지가 있는 업종(문구, 아동가구, 아동용품 관련 업종 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가. 당사는 [아이꿈터]의 업종의 특성상 아래의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영업일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가맹본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19:00 평일	주5일 이상, 월 20일 이상 7일 이상 연속 휴업 금지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에 통지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5명 이상(165㎡ 기준)	해당사항 없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아이꿈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홍보 및 상품광고	50%	50%	광고비 분담금은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청구하고, 2주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 추가 부담 가능
	가맹점모집광고와브랜드 홍보 및 상품광고	60%	40%		
	가맹점사업자모집	100%	-		
판촉 행사	지역 내 판촉행사	-	제작비용 부담	판촉행사비는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	개별 판촉 행사

※ 가맹점부담은 전국 및 지역광고에 따라 해당 가맹점 수로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 판촉행사에서 전단지 비용은 가맹점에서 100%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가맹계약서 전문1과 가맹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한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

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서 위반 시 위약금 청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보증금 70%의 납입하는 경우

- 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 나.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다.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라.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마. 제33조 제1항의 가맹계약 해지 또는 만료로 인하여 가맹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영업표지의 사용을 철거하거나 제거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보증금 50%의 납입하는 경우

- 가.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나. 제8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대금결제를 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다.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라.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마. 제18조 제2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품 등을 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가 보증금 30%의 납입하는 경우

- 가. 제13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나.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다. 제23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라.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2023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오프라인	자사온라인몰	기타온라인
금액				
비율	63%	20%	16%	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2023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상품수		
비율	0%	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지 걸리는 시간은 약 [43]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165㎡ 기준)
합계		43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1577-7898)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일	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일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1~3	없음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이후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제공 익일 이후	없음
가맹금 예치	- 참조 3에 따라 가맹금 예치	계약 체결시	22,7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2일	해당 업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나 165㎡ 기준으로 22,000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2일	
매대제작 공사	- 매대 고안 발주 - 매대 세팅	7일 3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8일	가맹비에 포함
상품 입고	- 초도 상품 및 카다로그 입고	2일	115,50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비용은 본 정보공개서 8쪽 IV-1 소요비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예치가맹금의 범위 및 절차는 별첨3 예치가맹금제도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자 간의 분쟁은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에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 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이하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라 함)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별도 협의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초기 - 오픈 시 지원	가맹점 오픈 전후 당사의 슈퍼바이저가 3일 간 영업활동 등을 지원	가맹점 오픈 초기에 한해서 지원하며, 추가 지원 또는 가맹점 요청 시 별도 비용 청구	오픈일로 부터 3일간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함 (가맹비에 포함)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경영 지도	가. 상품 판매소구점을 창출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경영지도 나. 해당 지역의 점포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전략 및 전술지도 다.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라. 판촉활동에 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 또는 인력파 견 통지(경영지도내 용, 기간, 인력파견 현황,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결과 제시 또는 인 력 파견 결정	가맹본부 필요 시 가맹점사업 자와 협의 또는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 자 부담	가맹본 부의 필요 시 또는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아이꿈터] 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
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아이컴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5일 (1일 8시간)	가맹비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 교육	상황별로 다름	가맹본부가 부담하나 가맹점 수련회는 가맹점사업자 부담	연 1회 이상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가맹계약 갱신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중랑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2	경기	일산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35-10

[상기 직영점은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3년 3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911,74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POS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 한 것입니다

- 별첨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가맹점현황
3. 가맹금예치제도 설명
4. 상품 목록
5. 직전사업년도말 임직원수
6. 직영점현황

별첨 1.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가맹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가맹금 예치제도 설명]

1.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가맹금예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분은 아래의 가맹금을 2호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당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보증금은 부가세없음)

구분	가맹비	오픈지원비	보증금	판촉물	합계
금액	5,500	2,200	15,000	5,500	28,200

2. 가맹금 예치 기관 및 계좌 내역

가. 예치기관 : 우리은행 중랑교 지점

나. 예치 계좌 내역

구 분	내 역	비 고
상 호	(주)아이꿈터	
명 칭	아이꿈터	
금융기관명	(주)우리은행	
지점명(소재지)	우리은행 중랑교 지점	
계좌번호	1005-201-567040	
금융기관 전화번호	02-432-7661	
예치계약 체결일	2009. 10. 27.	

3.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귀하는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별첨4 [상품 목록]

[상품 목록]은 양이 많아서 파일로 대체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또는 사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아이꿈터 대표이사 백운일.변현숙 (인)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브랜드명 : 아이꿈터
연 락 처 : 1577-7898

1.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2020 년 월 일
가맹본부의 사무실(실제교부장소)에서 서면(교부방법 기재)으로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
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아이꿈터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년 월 일
(2) 아이꿈터 정보공개서 목차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나.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라.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써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니다.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
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
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가맹희망자 성 명 : 년 월 일
주민번호 : 사인 또는 인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아이꿈터 대표이사 백운일.변현숙 (인)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3
 브랜드명 : 아이꿈터
 연 락 처 : 1577-7898

1. 본인은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리스트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수령여부	
		수령날짜	확인
점포예정지 확정 시	정보공개서와 동시수령		
점포예정지 미확정시	점포 확정 후 정보공개서와 별도로 추후 수령		

2. 인근 가맹점 현황(파일로대체)

No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년 월 일